

고 시 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18호

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535호, 2023.9.15.)」을 다음과 같이 조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3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층수별,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 : 천원/m²)

	구 분 (주거전용면적기준)	지상층건축비 (주택공급면적기준)
5층 이하	40m ² 이하	2,057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174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099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007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053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037
	125m ² 초과	2,007

6~10층 이하	40m ² 이하	2,202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326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247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148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197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180
	125m ² 초과	2,148
11~15층 이하	40m ² 이하	2,066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183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109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016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062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046
	125m ² 초과	2,016
16~25층 이하	40m ² 이하	2,089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207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132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038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085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069
	125m ² 초과	2,038
26~30층 이하	40m ² 이하	2,123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243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166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071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119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102
	125m ² 초과	2,071
31~35층 이하	40m ² 이하	2,156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278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200
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103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151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135
	125㎡ 초과	2,103
36~40층 이하	40㎡ 이하	2,189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313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234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136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185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168
	125㎡ 초과	2,136
41~45층 이하	40㎡ 이하	2,218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344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264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164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214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196
	125㎡ 초과	2,164
46~49층 이하	40㎡ 이하	2,288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417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335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232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283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265
	125㎡ 초과	2,232

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: 천원/m²)

지하층건축비
(지하층면적기준)

976

※주거전용면적과 무관

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

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: 1.2412

※ '20.3.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(=1)를
기준으로 산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)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